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126호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차.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5
----------	-----

발의연월일: 2023. 11. 17.

발 의 의 원: 김영록 · 강창석 · 구점득 · 김경수 · 김미나
김수혜 · 안상우 · 이해련 · 정길상 ·
황점복 의원(10명)

찬 성 의 원: 권성현 · 김혜란 의원(2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고 사회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차.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상담이나 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취업센터 운영
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범사례 발굴 및 육성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청년의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청년취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교육기관,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협력하거나 협약 등을 체

결한 경우에는 그 사업성과에 대하여 해당 기관, 단체,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기업이나 개인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기업등에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등이나 경제단체 또는 대학등이 제1항에 따른 직장체험 기회 제공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시행 2024.01.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 확대
 - 나. 청년의 학습권 보장 및 능력 개발 지원
 - 다. 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지원
 - 라.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 마. 청년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및 부채 경감
 - 바. 청년의 문화 활성화 및 문화 공간 마련
 - 사. 청년의 권리 보호 방안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명시되어있는 주요 사항들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4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전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함은 물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청년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